

보도시점 2024. 1.23.(화) 15:00 배포 2024. 1. 23.(화) 14:00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세무 현장 공동 방문 및 2024년 세정 방향 협의

- 서울 성동세무서 방문, 일선 세무직원 격려 및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
-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차원의 노력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4.1.1~25일) 중인 1.23(화) 오후 2시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하여 일선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무 현장방문에 이어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 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방문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현장방문 이후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노력을 당부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정책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의 업무보고도 국세청 업무보고와 유사한 방식의 현장방문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세무 현장에서 청취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조달청) 1.26(금), (관세청) 1.30(화), (통계청) 2.2(금)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준범 (044-215-2510)
		담당자	사무관	소재찬 (altria@korea.kr)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재면 (044-215-4310)
		담당자	사무관	김도경 (dkim7258@korea.kr)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범구 (044-204-2331)
		담당자	사무관	송찬규 (h021100@n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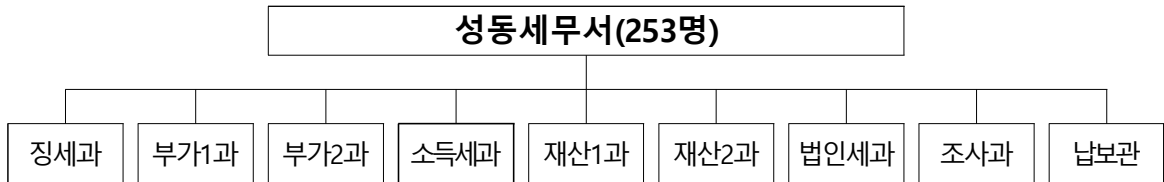


참고 1

서울 성동세무서 개요

□ 조직 및 인력

- (조직) 8과 1담당관(28팀, 2실)



- (인력) 정원 253명(현원 253명)

□ 관내 특성

(km², 천명)

관할구역	면적	인구	납세인원*		
			계	개인	법인
성동구·광진구	33.9	612	127	107	20

* '22년 통계연보 가동사업자 기준

- (지역) 성동구는 서울숲 주변 고급 주상복합(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 등) 등 신흥 부촌으로 부상중이며, 광진구는 광장·중곡·구의동 중심으로 안정된 주거지역이 형성

- 서울특별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수 1위(11.3만명)

- (세원) 넓은 관할구역에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다수 차지

* 식육판매(마장동), 중고차매매·구두제조·인쇄(성수동) 등

- 최근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사업자수가 증가 추세(최근 3년내 12개 준공, 10개 추가준공 예정)

□ '23년 11월 성동세무서 세수 실적

(조원, %)

11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22년	'23년	증감액	증감율
4.7	4.3	△0.4	△8.9

참고 2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24.1.1~25일) 개요

- (신고개요)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4.1.25(목)까지 신고·납부할 의무
-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22년 2기 확정신고(866만 명)보다 약 37만 명 증가

*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 7. 1. ~ '23. 12. 31.
	간이과세자	'23. 1. 1. ~ '23. 12. 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3. 7. 1. ~ '23. 12. 31.
	예정고지 미대상	'23. 10. 1. ~ '23. 12. 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 제3항)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¹⁾과 음식·소매·숙박업 관련 영세사업자²⁾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2개월(3.25.까지) 연장

1) 약 20만 명(개인15만, 법인 5만), 2) 약 108만 명(일반과세자 10만, 간이과세자 98만)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
- ◆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

-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¹⁾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²⁾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 지급

- 1)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까지 환급금을 지급
- 2) 중소·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까지 지급할 예정